KOSHA GUIDE

T - 32 - 2021

시험동물의 기관지·폐포 세척액 검사 지침

202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차 효 근
- 제·개정경과
- 2021년 11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OECD,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, Test No. 412: Subacute Inhalation Toxicity: 28-Day Study, 2018
 - OECD,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, Test No. 413: Subchronic Inhalation Toxicity: 90-Day Study, 2018
 - OECD, Guidance document on inhalation toxicity studies, Series on Testing and Assessment: No. 39, 2018
- 관련법규, 규칙, 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), 제108조(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, 제143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
-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)
-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6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시험동물의 기관지·폐포 세척액 검사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시험동물의 기관지·폐포 세척액 검사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평가 및 관리), 제108조 (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)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, 제143조(유해인자의 관리)에 따라, 화학물질 건강유해성시험법의 기관지·폐포 세척액 검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법과 관련하여 화학물질 건강유해성시험법의 기관지·폐포 세척액 검사 방법에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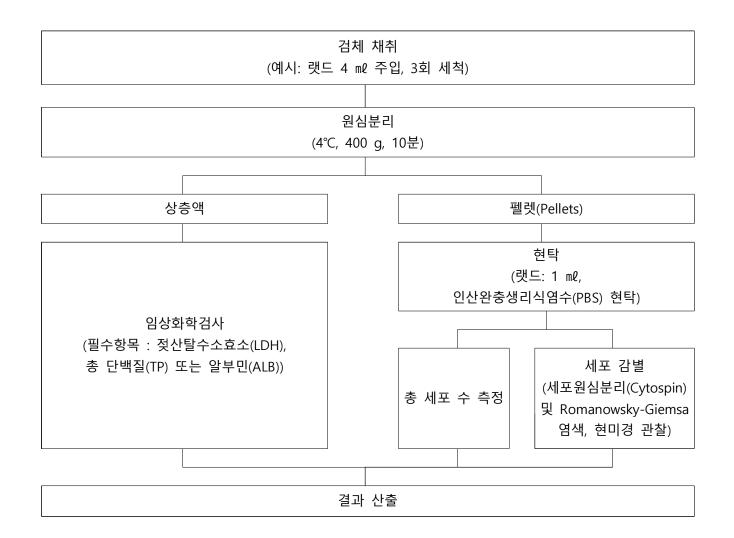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시험동물"이라 함은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말한다.
 - (나) "검체 채취"라 함은 시험동물의 폐에서 기관지·폐포 세척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말한다.
 - (다) "펠렛(Pellets)"이라 함은 침전물 또는 압착결정, 과립 등을 의미하며 시험과정 중 원심분리 후 상층액과 분리된 세포 침전물을 말한다.
 - (라) "현탁(Suspension)"이라 함은 뭉쳐있는 세포덩어리에 진동을 가하여 현탁시키는 과 정을 말한다.

- (마) "도말(Smear)"이라 함은 현탁된 펠렛을 한층으로 슬라이드에 부착시키는 작업을 말한다.
- (바) "봉입(Mounting)"이라 함은 염색이 완료된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한 시약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검사 절차

4.1 작업 모식도



4.2 검체 채취 준비

- (1) "인산완충생리식염수(Phosphate Buffer Saline, PBS)"가 담긴 주사기에 주사바늘과 폴리에틸렌 튜빙을 연결하여 준비한다.
- (2) PBS의 용량은 폐엽이 완전히 펴지는 용량을 주입하며, 동물 및 장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주사바늘 및 튜빙의 크기를 선택한다.

<班 1>	> 시험동물 종별 검체 채취 준	비사항 참고 수치
	랫드(Rat)	마우스(Mouse)

	랫드(Rat)	마우스(Mouse)
PBS 용량 계산	26 ~ 28 ml/ kg (체중)	
바늘크기	19 G	23 G
튜빙내경	0.86 mm	0.58 mm

4.3 검체 채취

- (1) 조직병리검사를 위해 폐 좌엽(left lobe)을 제외하고, 우측 폐엽(Right cranial lobe, Right middle lobe, right caudal lobe, Accessory lobe)을 사용하여 검체를 채취한다.
- (2) 채혈과 안락사가 완료된 시험동물의 흉강을 열고, 좌측 폐엽에 PBS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자를 사용하여 왼쪽 기관지를 결착시킨다.
- (3) 쇄골부분의 기관을 가위로 일정부분 절개하여 기관지에 튜빙을 흉선 부근까지 삽입하고 PBS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과 튜빙을 실로 묶는다.
- (4) 주사기 안의 PBS를 우측 폐엽이 완전히 펴질 때 까지 천천히 주입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반복한다.
- 예시) 랫드의 우측 폐엽에 약 4 ml PBS를 주입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.
- (5) 최종 회수된 검체의 양은 최초 주입한 PBS의 양의 60%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(6) 채취된 검체는 4℃ 이하로 냉장 보관한다.

4.4 원심분리 및 임상화학검사

- (1) 채취된 검체는 4℃에서 원심분리(400 g, 10분)하여 펠렛과 상층액을 분리시킨다.
- (2) 원심분리 후 피펫을 이용하여 상층액을 채취한다.
- (3) 상층액은 혈액생화학기기를 이용하여 젖산탈수소효소(LDH), 총 단백질(TP) 또는 알부민(ALB) 항목에 대해 필수적으로 임상화학검사를 실시한다. 단, 젖산탈수소효소(LDH)는 채취 당일 검사를 실시한다.
- (4) 필요에 따라 추가로 사이토카인(cytokine), 케모카인(chemokine) 등을 효소결합면역 흡착검사(Enzyme-linked immunosorbent assay, ELISA) 등으로 검사한다.

4.5 총 세포수 측정

- (1) 펠렛만 남은 검체에 4℃ 의 PBS를 첨가하여 침전된 세포를 현탁시킨다.
- (2) 현탁된 세포는 세포계수기를 이용하여 총 세포수를 측정한다.

4.6 기관지·폐포 세척액 검사 슬라이드 제작

- (1) PBS로 현탁시킨 검체를 세포원심분리기(Cytospin)를 이용(약 300 ~ 400 g, 10분)하여 슬라이드에 도말시킨다.
- (2) 세포원심분리기를 통해 제작된 슬라이드는 자연건조 시킨다.
- (3) 건조된 슬라이드는 Romanowsky-Giemsa 염색법에 따라 염색하고 염색 과정 중 슬라이드의 염색 상태를 확인하여 염색시간과 정도를 조절하며 염색한다.
- 예) 99.9% 메탄올 고정(약 5초, 5회) → Eosin 염색(약 5초, 5회) → Methylene Blue 염색(약 5초, 5회) → 증류수 헹굼 → 슬라이드 건조

(4) 염색된 슬라이드는 건조시키고 커버 슬라이드로 봉입한다.

4.7 세포감별

- (1) 봉입이 완료된 슬라이드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대식세포, 림프구, 호중구, 호산 구로 세포를 분류하고 총 세포수가 400개 이상이 될 때까지 세포를 감별한다.
- (2) 광학현미경으로 세포감별 시, 세포의 겹침이 적고 세포가 균등하게 도말된 부분을 시야의 중앙으로 위치시킨다.
- (3) 슬라이드를 'ㄹ'자 형태로 이동하며 세포감별을 실시한다.

4.8 주의사항

- (1) 채취된 세포는 사멸하지 않도록 분석하는 동안 4℃ 이하로 냉장 보관하고, 임상화학검 사를 위해 분리한 상층액은 -20℃ 이하에서 보관한다.
- (2) 기관지·폐포 세척액 검사는 안전하고, 배기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.
- (3) 여러 마리를 동시에 검사할 때는 개체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반복 확인한다.
- (4) 검체 채취 시 채취한 PBS 용량이 주입한 PBS 용량의 60% 이상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동물번호, 채취 용량 및 사유를 기록한다.
- (5) 기기의 이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, 해당 동물번호와 사유를 기록한다.
- (6) 세포감별 시, 슬라이드의 총 세포수가 400개 미만인 경우 해당 동물번호와 사유를 기록한다.
- (7) 슬라이드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, 슬라이드 제작 당일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재제작하고, 슬라이드의 재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동물번호와 사유를 기록 한다.

5. 이상 발생시의 처치

- (1) 작업 시 주사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늘에 찔렀을 경우,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혈 및 소독한다.
- (2) 상처가 깊은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.